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제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